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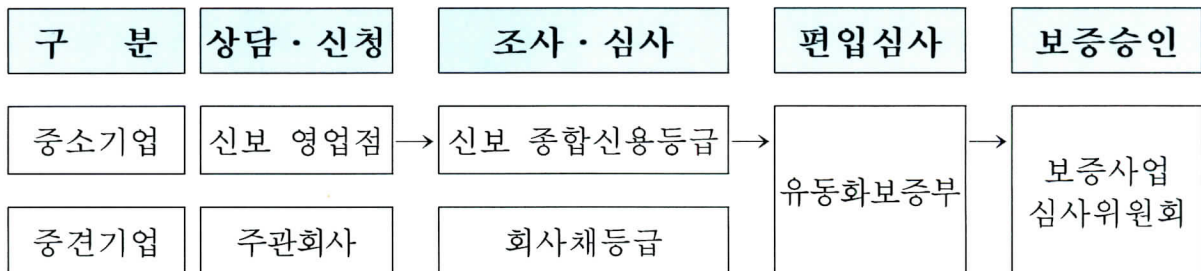
2013년 제1차 건설사 유동성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이용안내

- 주관기관 : 신용보증기금
- 신청접수처 : 신용보증기금 각지점
- 발행일정

- '13. 1. 25(금) ~ 1. 31(목) : 신용보증기금 접수기간
- '13. 2. 15(금) : 보증승인(보증사업심사위원회)
- '13. 2. 21(목) : 기초자산(회사채) 발행
- '13. 2. 22(금) : 건설사P-CBO 발행

※상기 발행일정은 최소 모집규모 미달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

□ 신청절차

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문의 바람.

□ 지원대상

중 소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CPA감사보고서 有 : 신보 종합신용등급 K10이상 ■ CPA감사보고서 無 : 신보 종합신용등급 K9이상
중 견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-이상

□ 지원한도

회사채 신용등급 및 신용보증기금 자체등급에 따라,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 책정

*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
□ 편입 제한 대상

- 신청기업 또는 주력기업이 심사일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- 보증금지·보증제한기업 및 **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** 기업
- 당기 CPA 감사의견이 “부적정” 또는 “의견거절”인 기업
- BB⁺(**K6**)등급 이하 기업으로 2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.0미만인 기업
-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(건설업은 450%)
-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기업가치가 “0”이하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은행연합회 건설업 상시평가 운영지침에 의해 주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“C”, “D”등급 기업

□ 매출액·자기자본·차입금 및 사채발행 한도

구 분	편입한도
매출액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조업,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: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/3이내 또는 최근 4개월간 매출액 이내 ■ 기타업종 :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/4이내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이내
자기자본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사채등급 BB(K7)등급 이하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
차입금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연간매출액 이내

*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 + 보증재단보증 + 편입금액 +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

□ 발행조건

- 만기 : 3년
- 발행금리 : 중소기업 **4%(K1등급) ~ 5.8%(K10등급)** 수준
중견기업 **5%(BBB⁺등급 이상) ~ 6%(BB⁻등급)** 수준
- *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시가평가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후순위채 인수 : 건설사는 편입금액의 5%
비건설사는 편입금액의 3% 수준 인수